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925

발의연월일: 2024. 8. 19.

발 의 자:한병도·위성곤·정태호

진선미 • 윤준병 • 정준호

김영배 · 이춘석 · 서미화

위성락 • 문대림 • 이원택

서영교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경로당 지원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으로, 그 밖의 비용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급 식의 유무와 형태가 상이한 상황임.

한편,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노인복지시설로서 경로당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노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증진하기 위 해 정부에서 경로당에 대한 체육·문화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음.

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부식비 및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・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

여 결식을 방지하고, 체육·문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(안 제37조의2, 제37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2제1항 중 "양곡(「양곡관리법」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)구입비"를 "양곡(「양곡관리법」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) 및 부식의 구입비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지역노인을 위한 취사에 소요되는 연료비와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3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7조의4(경로당에 대한 여가활동 비용 보조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·문화 활동 등 여가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7조의2(경로당에 대한 양곡구	제37조의2(경로당에 대한 양곡구		
입비 등의 보조) ① 국가 또는	입비 등의 보조) ①		
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			
여 예산의 범위에서 <u>양곡(「양</u>	양곡		
곡관리법」에 따른 정부관리양	(「양곡관리법」에 따른 정부		
<u>곡을 포함한다)구입비</u> 의 전부	관리양곡을 포함한다) 및 부식		
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	의 구입비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		
	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		
	에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지역		
	노인을 위한 취사에 소요되는		
	연료비와 인건비의 전부 또는		
	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		
<u><신 설></u>	제37조의4(경로당에 대한 여가활		
	동 비용 보조) 국가 또는 지방		
	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		
	예산의 범위에서 체육・문화		
	활동 등 여가활동에 소요되는		
	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		
	<u>할 수 있다.</u>		